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백유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토대로 2013년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 체계,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역격차해소, 예산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인용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수련활동개념을 축소해서 정의하고, 청소년활동개념의 외연은 넓혀야 하며, 역량개념은 실천가능한 전략적 용어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네트워크 중심의 역할로 탈바꿈해야 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청소년활동 관련 협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시설 및 기관들이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자로서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와 같은 방식의 청소년지도인력양성체제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의 역량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이끌 수 있는 지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의 원리를 철저하게 반영하여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지역격차의 해소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개념의 재개념화,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청소년지도인력양성, 전달체계, 지역격차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역격차해소, 예산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인용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여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후,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였음.

3. 주요결과

-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함. 수련활동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청소년 활동개념을 재개념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 최소한 수련활동의 외연을 너무 넓게 생각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바뀌어야 하며, 청소년활동개념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정책의 범위 내에서만 청소년활동정책을 정의하지 말아야 함. 청소년활동개념은 외연을 넓히고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청소년 역량계발의 개념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정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센터와 각 시설의 기능분화와 전문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야 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각 시설협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함.
- 청소년시설 및 기관들이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자로서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사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청소년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주목해야 할 사항임.
- 청소년지도인력양성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청소년정책의 주변부에서 벗어나기 힘들.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의 자질과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역량이 앞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중 핵심적인 역량으로 강조되어야 함.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의 원리를 철저하게 반영하여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함.
- 지역격차 해소의 문제는 청소년활동정책에서는 거의 고려되어 오지 않았음. 시설의 확충, 정책사업의 운영 등 지역격차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음. 청소년활동정책 전반에 걸쳐 지역격차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II.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쟁점과 방향	7
1.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9
2.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11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설정	11
2)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14
3)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	20
3.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23
4.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25
5.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36
6. 청소년활동프로그램	40
7. 지역격차해소	49
8. 예산	52
III. 결론	57
참고문헌	61

표 목차

〈표 II-1〉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1
〈표 II-2〉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설치율 현황	32
〈표 II-3〉 청소년활동 지원(청소년활동) 〈청소년 문화존〉	45
〈표 II-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청소년활동)	45
〈표 II-5〉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연도별 운영지원 개소수	46
〈표 II-6〉 청소년운영위원회 연도별 운영지원 개소수	46
〈표 II-7〉 청소년활동 지원(청소년활동) 연도별 예산 현황	5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육성법 제정 이래 20여년 동안 이른바 청소년계는 괄목할 만큼의 시설, 인력, 기관 등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그러나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정책의 사회적 위상은 높지 않다.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지만, 청소년인구 전체에 대하여 양적으로 10% 겨우 넘는 정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이광호, 2011, p12). 청소년육성의 가치 아래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업들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단위 사업의 목표는 있지만, 사업의 총체적 성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청소년 육성이나 역량, 또는 그 하위개념들이 목표라면 목표일 수 있겠지만, 사업과 목표 간의 간극은 너무 멀다. 한 마디로 말해 청소년활동정책에 뚜렷한 이정표 없는 것이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이래 역량개발이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활동정책 인프라는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돈스러운 상황을 정리가 필요하다. 주무부처의 잦은 이동으로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있다. 청소년활동정책이 청소년보호·복지정책, 아동정책, 여성가족정책 등과 통합되면서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교육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최근 2~3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는 진로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타영역에서의 변화가 청소년활동정책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적인 취약성이 문제일까? 둘 다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장 교육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 내적인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정책이 타부처 정책과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독립성을 강조할 것이냐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점은 논란거리이지만 수요자 중심에서 보자면, 정책의 연계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포함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가감없이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연구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들은 대부분 논쟁적인 것들이다. 각 항목들이 학계와 현장에서 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것들이다.

본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그간 회자되던 문제를 최대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논쟁을 위한 시론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2013년 같은 주제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남겨진 과제는 2013년 연구과제에서 다뤄질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청소년활동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세부적으로는 청소년활동개념과 목표의 설정,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지역격차해소,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개념 분석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문헌분석과 정책포럼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의견조사지를 만들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분석, 포럼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청소년활동개념,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와 역량지표 설정의 문제,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지역격차해소, 예산 등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지는 자유기술식으로 구성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표본수도 대상선정 절차도 통계처리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2013년에 추진될 연구를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조사였다. 연구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여 문제점과 방향을 기술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 항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전문가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필요한 향후 절차를 제시하였다.

제 II 장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쟁점과 방향

1.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2.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3.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4.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5.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6. 청소년활동프로그램
7. 지역격차해소
8. 예산

제 II 장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를 위한 쟁점과 방향

1. 청소년활동정책의 평가

일단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든 정부정책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은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엄밀히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주변적인 정책에 머물러 온 청소년활동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첫 번째 단계이다. 물론 문제는 복합적이다. 목표가 불분명하다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고, 전달체계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채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청소년정책의 개념은 물론 목표, 과제, 전략 등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청소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 정책의 목표와 과제,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 (C)

“10년 또는 20년된 사업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업고, 또 업고 이어져 제대로 된 평가 한번 없이 또는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등 조사한번 없이 단순히 수치의 확장으로만 결과를 본다는 데 있다. 단순히 양적 평가는 무수히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질적 평가는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 정책들이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책입안자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것인지 냉정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D)

“주변부정책에 머무르는 청소년정책의 한계, 이론적·실제적인 청소년정책의 부재, 청소년정책전달 체계의 문제(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단절: 정부산하기관과 민간위탁 시설의 혼재 등) 등이 복합적으로 현재 청소년 정책수행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B)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업의 나열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땀질식 수정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주변적인 정책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다. 주무부처의 잦은 변동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것만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잘 할 수 있는 부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A)

청소년계 전반적으로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한 담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학계의 책임이 크다. 청소년정책의 이념을 학문적으로 다져오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다. 양적인 팽창은 이루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 아울러 청소년계의 담론적 차원의 논의 부족과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각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많은 차이가... 어렵게 한 측면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중앙정책부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중기적으로 중점 육성 시설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여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E)

청소년활동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많은 자리를 통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우선 역량지표도 지표지만 청소년정책의 목표보다도 청소년 세대의 현안이나 청소년 운동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개선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청소년계의 의견을 제대로 청소년정책에 녹아내리게 하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 공모사업 위주로 ... 나눠주는 형식, 청소년지도사를 전문인으로 대우하지도 않아 청소년지도사 스스로의 역량도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 (F)

그렇지만, 현장의 자구책도 필요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모아낼 수 있는 역량과 조직력도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어려움은 총체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문제로 보기 힘들다. 다만, 정책은 이러한 현장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것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갖가지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소진되어 가는 방식의 사업을 잘 정리만 해도 변화는 가능할지 모른다. 점점 현장의 역량이 소진되어 가게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 주체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일은 정책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엄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평가란 행정적인 절차로서의 평가가 아닌 관련 주체들이 모두 모여 정책 그리고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실천적 행위 일체를 말하며,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정책이 뚜렷한 목표를 세우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대로 청소년업무가 여러 부처를 전전궁궁했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애초부터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가 뚜렷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복지정책이라면 수혜율만으로도 어느 정도 뚜렷한 목표가 되지만, 청소년활동정책은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른바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만 통용되는 개념과 목표로는 청소년활동정책을 견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1) 청소년활동개념의 재설정

그간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이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대와

시대조류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개념이다.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성, 긍정적 발달과 같은 가치들을 추구하는 지금 아직까지 수련활동 또는 수련의 개념이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심개념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학과와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련활동개념에 익숙하지만, 일반인들, 청소년이나 부모, 기타 청소년관련자들에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 적어도 청소년활동정책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련활동개념이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심개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이기봉 외, 2011),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첫 번째, 신중론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수련활동개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입장도 있다. 수련활동개념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또는 단순히 수련활동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을 폐기해야 한다면 단순히 사회적 기대와 시대조류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다. 왜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과 타당한 이유들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개념은 오랜 세월을 통해 합의된 것들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기 위한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지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청소년수련활동은 그동안 청소년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중요한 개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며, 청소년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 보다는 개념의 재정립과 방법론에 대한 변화, 그리고 수련활동의 발전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협의적 개념 보다는 청소년활동 차원의 광의적 개념을 재정립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의 개념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유형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요인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며 청소년관련법이 92년에 만들어지면서 수련활동이란 개념이 정착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개선과 인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수련활동이란 영역이 교류활동과 문화활동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하위영역으로 일반화시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C)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오는 괴리감 정도라고 느껴짐” (D)

“청소년수련활동의 폐기 입장도 2가지 논의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우선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을 현재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단순히 청소년수련활동에서 수련이라는 2글자만 삭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앞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련활동이라는 개념이 시대조류나 현대적 가치와 맞지 않거나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배치 내지는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나아가 청소년활동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심적인 핵심영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정책이라는 표현과 함께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를 둘러싸고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전자의 주장에만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을 단순히 청소년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면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심적 핵심영역은 청소년수련활동 대신 청소년활동으로 대체될 뿐이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 청소년활동정책의 전환 모색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청소년수련활동이 가지는 개념적 오해나 이해 부족을 청소년활동 개념으로 바꾸면 일반 국민이나 청소년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미봉책의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다른 입장은 청소년육성정책의 핵심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 폐기는 청소년육성정책의 개념을 청소년정책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결국 통합적 청소년정책 개념의 채택과 더불어 청소년활동 분야의 근본적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정책이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할 정도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교육의 주요한 하나의 교육, 내지는 학습, 혹은 계발 방법의 하나라고 인식하려는 입장으로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비형식 학습이나 교육의 주요한 방법이라고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활동정책의 가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다.” (E)

두 번째, 대체론 또는 폐기론이다. 대체로 수련활동개념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과 괴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에 많이 쓰이던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은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못하다.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의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청소년의 ‘참여’ 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되는 현 시점에서, ‘수련’ 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념-청소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L)

“수련활동에 대한 논의는 이제 진부한 감이 없지 않다. 수련관(원), 수련거리 등을 제정할 당시와는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며 요즈음 개원하는 많은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센타” 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시설 명칭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시대적으로 특별한 부담감이 없는 『센타』 를 사용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E)

“서울시의회에 수련시설협회가 아닌 시설협회로 명칭 변경을 작업하여 지난 8월에 개정된 바 있다.” (F)

“극기훈련, outdoor 수련활동 등 제한된 특정 활동에 대한 용어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청소년활동 전반을 수련활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폐기되었으면 한다.” (B)

“개념에 대한 폐기는 필요하다. - 그런데 폐기되지 않았나요?” (H)

“청소년 수련활동 개념의 변화를 원한다면 수련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어떠한 억압이나 강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히 수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청소년활동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M)

“이미 청소년수련활동에서 수련이라는 용어의 폐기는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지난 정부의 역사적 배경과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지시 통제적 관점이 떠오르게 되며, 현대 사회에서의 수련이라는 용어의 사용됨에 대한 문제적 접근은 최대한 빠르게 시정되어야 한다.” (J)

2)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부터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0; 2012). 그렇지만, 아직 청소년활동개념과의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역량의 개념은 여전히 혼재되어 있고,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육성과 역량개념의 하위개념들은 상당 부분 중첩된다. 상호모순된 개념은 아니다. 역량을 육성 또는 활동의 결과로 보면, 혼돈은 줄어든다(참고 : 김영호, 2012; 유성렬, 2012). 어느 학문분야에서나 개념논쟁은 끊임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립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학문적 논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량계발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들이 목표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목표개념이 바뀌었을 뿐 청소년활동정책 관련 사업들은 전과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들은 서로 맞물려 있지 않다. 지금까지와 같은 사업나열식의 방식으로는 역량계발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한편 역량이라는 목표설정 자체가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질적으로 역량자체가 어떠한 한 활동을 통해서만 계발되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된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DeSeCo)에서 말하는 도구활용, 자율적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를 놓고 살펴보더라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과목 시험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시점과 지표의 기준 등을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지만 데이터의 정확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을 얻어내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청소년시설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단순한 모임을 통한 단기성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량을 측정한다면 결과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결과가 정말 청소년들의 역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지의 의문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동아리활동이나 기타 연간 또는 지속적인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도 역량자체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활동시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의 활동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반드시 활동만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일 계발되고, 향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역량을 청소년정책으로 중요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청소년활동의 모호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효과들을 역량으로만 국한해 그 범위와 다양성을 평준화시킬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이 청소년 역량계발에 맞추어 작성된다면 이는 정책이 아니라 사업정도로 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A)

“청소년기본법 제 3조에서는 청소년육성을 청소년활동 제공,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통해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역량이라는 개념은 청소년기본법 상에서 어느 위치에도 놓여있지 않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의 자질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활동은 오히려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L)

“지적도구활용 영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과를 중심으로 추진 진행하고 이질적 집단의 상호작용과 자율적 영역은 청소년 현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소년 활동 현장만으로 좁혀 볼 때 이를 추진하려 할 때 역량 지표의 부재(? 부족, 미비)가 큰 문제이다. … 정책연구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의 지표화를 연구하여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E)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분야의 경우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활동분야의 경우, 한 아이가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방문해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할 경우, 이 아이를 어떤 분야의 활동에, 어떤 방법을 통한 참여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없다. 그러니 일선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일회성, 단발성 캠프나 행사에 청소년의 성향과 관심도와는 별반 상관없이 그저 참여하면 역량은 상승한다는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학문적인 추상적 활동이 남발하고 있다. 청소년역량개발 지수나 활동평가에 관한 어떤 검사도구등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

“현재는 추상적 수준의 ‘청소년역량개발’ 이 모든 사업의 목적으로 설정되어서 각 활동의 구체적 목표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애매한 사업목표는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국민적인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B)

“청소년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중 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과거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안들이며, 청소년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M)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청소년육성이든, 청소년활동이든, 청소년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만큼의 노력을 하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이 또한 냉정하게 말하면 청소년정책의 목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정책입안자들도 문제이지만 공부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많다는데 있다.” (D)

“청소년의 역량을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지표가 합의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한 목표 달성을 평가할 만한 지표를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N)

“청소년역량개발이란 주제어(혹은 용어)는 애초 청소년육성이란 용어를 대신하는 용어로 삼기 위해 선택되었던 용어란 느낌이 있다... 현장 및 이론가들로부터 다수의 합의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용어를 선택한 듯한 느낌도 있다. 이러 저런 연구들이 그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청소년역량의 역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역량을 어디서 어떻게 개발하며 그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다보니 역량개발이 청소년육성을 대체한 개념이 되었지만 그 하위범주의 것들, 이를테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이라든지 하위개념 등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다보니 역량개발의 개념은 모호한 채 상황(정책현실)은 예전과는 다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I)

“역량의 척도, 기준, 수준 모두가 제각각이다. 최소한 국가의 정책적 접근 방향에 있어서 명확한 정체성 필요하다... 현재의 청소년기관단체에서의 정체성 확보도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청소년(수련) 시설들의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기관단체와의 프로그램 성격과 정체성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더군다나 근래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연계하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과 입시학원에서 진행되는 창체의 성격까지도 전혀 다르게 보여지지 않을 정도이다. ‘청소년수련시설과 입시학원에서의 창체가 어떻게 다를까?’ ...따라서 역량개발에 대한 기준과 척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지역의 청소년기관시설에서 정체성과 연관지어 “청소년활동”의 핵심 역량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이러한 실질적 내용을 제시하자면 ‘청소년자치활동’, 특히 ‘참여활동’에 포커싱 해야 한다. 활동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역량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J)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역량개발의 개념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의 청소년육성정책에서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초기 청소년육성정책은 청소년수련활동을 개인적 덕목과 사회적 덕목으로 구분하여 덕목 지향적인 청소년 분야의 독자적인 정책적 사업 영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 상식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학교교육이나 학교 밖 교육의 어느 한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청소년활동 혹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역량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 영역이 힘을 합쳐 청소년의 이런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노력하는 하나의 정책적 방향과 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역량개발의 목표는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의 역량개발이 청소년분야의 조그만 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혹은 청소년정책 전반에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E)

역량지표도 아직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량지표의 문제는 물론 역량의 개념과도 맞물려 있다. 역량개념이 정립되고(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육성과 같은 개념과의 관계가 보다 명확히 정립되고), 역량지표(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의 정책들(현단계에서는 사업의 수준들)을 재정비해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이상적인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현단계 정책의 평가를 통해 그 간극을 메울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단계의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재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지표가 잘 개발되더라도 개인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내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청소년의 역량이 표준화되고, 계량화 된다면 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량만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나 정책만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억압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역량지표 난립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혼란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A)

“역량에서의 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단계의 역량지표는 활동이나 육성의 개념과 명확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 보급한다면 다른 지표들 보다는 우선적이고 포괄적이며 공공적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늘 초기에는 많은 의견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일정부분 안정되어 관계자들은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계가 모두 일치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버전(?)으로 역량지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

“청소년역량 자체가 일정기간 혹은 단기간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내적역량이나 사회적 기술들은 단순한 지적수준평가와는 다른 접근이 되어야 한다...단위사업별 수준에 따른 목표평가, 참가자 만족도 평가, 청소년활동으로서 과정평가, 역량평가 등 다각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모든 정책을 ‘청소년역량계발’ 이라는 틀에 맞추으로써 또다시 현실감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B)

“이 다양한 역량 개념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가? ... 역량 지표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질문에 이 질문이 과연 역량을 측정하기에 타당한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H)

“거시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역량계발의 지표를 정리한다면 현재의 활동 영역에 대한 정비가 총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N)

“역량지표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시설의 사업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개발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평가체계와 연동할 때 현재의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의 평가는 그 자체가 모순임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J)

“학교교육이 중점적으로 포커싱할 영역과 청소년활동정책에서 포커싱 할 영역을 나누어 역할 분담을 하면 이것이 국민전체로부터 청소년정책이 인정받는 길이고,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길이며, 청소년활동정책이 생명력을 얻는 길이라고 본다.” (K)

3) 청소년활동정책의 범위

역량계발은 활동정책만의 결과는 아니다. 역량은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삶의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역량계발은 장기적인 경험의 산출물이고, 청소년정책(주무부 처만의 정책이 아닌 모든 관련 부처의 정책)의 총체적인 결과로 산출된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청소년의 역량계발을 목표로 하고, 측정하는 것은 당연히 청소년정책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운영하거나 진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즉, 역량을 청소년활동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청소년활동정책의 스펙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 범주에는 교육도 포함된다. ‘교육’ 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교육’ 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점에 대해서도 지난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지역사회 연계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 학교는 물론 청소년기관이 여러 분야의 기관들과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과의 연계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과 회의적인 입장이 대립된다.

“교육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육정책의 많은 한계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평가는 과정들을 생략해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동시에 성장이 아닌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교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라면 청소년현장은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경험들을 제공할 것인지, 청소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발해 나갈 것인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교육정책과 선부른 제휴를 맺는다면 청소년정책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내지는 부수적인 정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A)

“청소년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청소년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통해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정책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합한 활동의 체계적 전개를 위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단체 및 시설 등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의 체계적 정비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학교 등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교안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여 청소년활동의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계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C)

“청소년계 인접 학문 혹은 인접 영역과의 교류와 연대에 너무 소극적일 뿐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담장 높이가 너무 많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은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역시 제도적,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들 인접 학계 혹은 영역지대와 최소한 교류, 보다 넓게는 연대와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영역에서 보자면 학생은 창의적 체험이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청소년계와 너무 많은 공유면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재가 영역 안에 청소년을 가지고 있어 이를 거시적, 국가적 관점에서 자원의 분배와 지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나 교육적 차원을 “민주시민의 인권과 권리”라는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E)

“교육은 교육이고 청소년활동은 교육이 아니라는, 그러면서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청소년계에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마치 아이들 데리고 놀아주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두 가지 인식이 아이러니하게 공존하는 것이 청소년판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는, 또는 청소년단체나 시설은 청소년계의 시각이 아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청소년을 조망하여야 한다. 그것은 교육적일수도 있고 정치적일수도 있고 사회복지적일수도 있어야 한다. 다변화하는 청소년문화를 사회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추출하려면 이러한 NGO적 시선과 조망을 일선 지도자들이 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청소년지도사의 질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많은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의 교류와 경험 나눔, 특히 학교와 많은 경험을 나누어야 한다. 교육정보다는 일선 학교가 먼저이다.” (F)

“자기 정책의 명확한 정체성 없이 다른 분야와 연계한다는 것은 곧 다른 그 어떤 분야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실제 청소년활동에서의 역량이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 분야와의 완전히 차이를 둔 독자적인 내용이 되기는 어렵더라도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정체성 확립은 먼저 선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J)

“제도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청소년 역량계발 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증과정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B)

“전체 청소년 사업 비중에서 과연 학생이 아닌 비학생 또는 학생 연령을 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 비율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변화는 근본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면 학교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H)

“청소년에 관련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노동부, 경찰청 등등 많은 국가 부처 및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들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실행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의 역량계발은 활동 부분과 함께 교육부분이 중요함으로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교육과의 연대를 구성하여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M)

“청소년계가 청소년역량계발이라는 대 전제를 제시하면서 중심을 잡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청소년정책의 스펙이 확장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역량계발 지표로 선언된 것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연대와 연계는 필수적인 대국가 과제가 되는 것이다.” (N)

“청소년관련 학과 등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관련해 부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학교/학교교육과정 등에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 등 보다 구체적이고 합당한 교과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

“학교교육과의 연계나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청소년정책 영역에서는 학교교육과 다른 핵심가치와 철학 및 자신의 규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한국사회에 청소년활동 영역의 정책 채택과정에서 잉태된 배타적 독자적 영역 개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개념 이해와 인식은 주요한 갈등 내지는 논의의 혼선을 빚고 있다... 청소년활동 사업의 부문화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육성정책이라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정책제도화와 더불어 청소년(수련)활동으로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청소년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한 사업 부문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등으로 청소년사업 부문에서는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 1991년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활동 사업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중심으로 더욱 축소·조정되기에 이르렀다. 2004년 2월 청소년기본법에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육성’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사회여건과 환경개선 및 청소년보호(청소년기본법 제3조 2) 등으로 영역을 재조정된 바 있다. 그렇지만 개별 특정부처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서 청소년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 체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활동 사업은 청소년행정의 개별 특정부처로의 이관 등과 맞물려 다른 부처에서 하지 않는 특정 부처의 고유 업무로서 ‘청소년사업’ 중심으로 제한된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E)

3.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청소년활동정책의 청소년전달체계 재정비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사업부서가 아닌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촉매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나아가 컨설팅과 슈퍼바이징이 가능하도록 기관운영의 방향을 전환해 가야 한다. 청소년활동관련 기관들의 전문성 분화의 원칙이 중요하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를 확장할 계획을 담고 있다. 시군구까지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시도센터의 역할이 먼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당장 시도센터가 다양한 설립주체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다.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들은 지역마다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별도 법인인 곳들도 있고 운영주체들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위탁운영주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정책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를 제대로 따져보고, 청소년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A)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별 청소년기관의 하나인 것처럼 운영되는 상황이다.” (L)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역할이 컨설팅과 슈퍼바이징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서울과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청소년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시설 건전성의 적정도를 평가해서 해마다 정책 목표치를 높이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

“한국청소년진흥원이나 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에서 상위조직 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지원자 역할이 아닌 통제와 지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몇몇 이슈화되는 정책에 대한 집중화로 모든 역량이 이슈화에 집중되어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정책이나 방향에 혼란을 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인증제, 포상제, 창체 등). 또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깔대기 즉 역삼각형과 같은 구조로 정책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중앙정부나 상위조직에서는 넓은 영역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전달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를 거쳐 시군구에 전달될 경우에는 담당자 한명이 전달되는 내용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시설의 운영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직영과 위탁, 법인형태 등에 따라 전달체계혼선이 발생된다. 따라서 전달체계를 단일화해서 양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G)

“활동진흥센터와 더불어 지역청소년시설협회의 활성화와 지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활성화를 통한 연계시스템 확충도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듯하다. …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센터의 성격 변화에 앞서 그 센터가 어떤 지역사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인력의 지역운동화에 대한 무장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F)

“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조직체계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B)

“활동진흥센터의 역할에 있어서도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자원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컨설팅과 슈퍼바이징 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 다만, 현재 각 지역에 특색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나치게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져 결국 센터의 역할이나 모델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오히려 사전 연구를

통해 센터의 모델을 크게 3~4가지 정도로 예측하여 제시하고, 각 지역에서 이 센터의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H)

“시도의 종합지원센터 본래의 기능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대한 예산배분 및 인력배치에 대한 권한을 시도 센터에 부여하고 전달체계의 중간단계 부서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능(컨설팅, 슈퍼바이징)들도 강화, 보강시킬 필요가 있다.” (I)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도 단위에서 움직인다. 시군구 단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기관의 전문화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농촌지역이 열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지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조금 더 지역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J)

“중앙단위의 기관이나 시도단위의 기관이 직접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역할혼미이다.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앙단위나 시도단위의 청소년기관은 청소년의 생활단위에서 구체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과 활동은 다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K)

4.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활동정책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른바 체험활동의 효과성이라는 미시적인 접근으로 풀기는 어렵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식의 학문적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근거가 없어서 청소년활동정책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의 질은 중요하지만, 활동프로그램운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존재감을 높이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즉, 청소년기관의 공공재로서의 성격, 지역사회 내에서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정책은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사업의 양과는 무관하다. 사업의 방향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파견이 가능한 주체는 지역에 얼마든지 있다. 청소년기관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직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장이 사업에 얽매이기보다는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어야만 청소년(활동)정책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조금씩 이견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이에 선행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오는 문제들도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 정책이 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 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 한 국가가 필요하다. …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존재감을 높이기보다는 청소년기관들의 한계들이 지역사회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을 우려도 가지고 있다.” (A)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문성과 공신력,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관은 존재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명과 비전,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청소년지도의 전문적 개입을 통한 신뢰도를 증진해야 한다. 둘째,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현실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 실행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내 각종 기관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공익적 노력이 필요하다.” (C)

“청소년기관들의 공통적인 미션이 필요하다. … 몇몇 공통사업이 있더라도 학교연계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관들의 사업을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사업을 체계화해야 한다.” (L)

“청소년은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청소년기관의 전용 공간화는 청소년 유관기관의 통합 (교육과 청소년과 문화시설을 포함)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수련관을 예로 들 경우 교육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낮시간이나 학기 중에는 유희시설로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공간의 지역 시설 역할 및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네트워크의 거점 기관은 이미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지의체로, 청소년 영역에서는 CYS-NET, 교육 영역에서는 교.복.투 사업의 지역사회전문가 등으로 국가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동원과 공급을 위해서는 이들 연계망과 유기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자원의 부족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의 제공, 인력의 담당 등 가능한 부분부터 열어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

“청소년수련시설 특히 수련관의 존재이유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질문을 접하게 된다. … 특히 수련시설의 위탁문제로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자립, 또는 지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재로서의 성격이나 책무성을 일반시민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시민사회 단체나 지역사회와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운동성 즉 네트워크를 통해 호응을 얻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G)

“청소년수련관 등을 경영하는 관장들의 지역사회 공공시설적 마인드가 약하다....일선 관장의 보수교육 강제도 없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없어도 시설장으로 인준되는 판국이다. … 위탁운영법인 들은 청소년수련관을 교세확장이나 브랜드마케팅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위탁운영단체 에서 선임한 관장들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보다는 돈벌이 일회성 사업, 중앙단위적 캠프사업이나 지역의 구분을 두지 않는 대규모 영리 행사 유치에 집중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미비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시설장의 임명 기준을 강화하고 보수교육과 지역사회 행정과 연계망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의 강한 NGO적 교육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필수여야 한다. 그런 것이 병행된다면 희망은 있다고 본다.” (F)

“가장 우선은 조직특색에서 공공성, 지역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중심 체제에서는 공공성과 지역사회책무성의 담보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공공성과 지역사회책무성에 대한 조직적 해결이 가능하고서야 청소년활동 전문성(지역사회 내 청소년역량계발기관으로서 역할 정립)이 논의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역량계발활동 자체의 주류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청소년 진로역량계발활동은 직업체험, 직업정보제공 등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 초, 중, 고별 혹은 연령별 진로역량계발활동 등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B)

“청소년시설(수련관, 문화의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강좌형 프로그램과 단기성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강좌형 프로그램은 일반 사교육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시설이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강좌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운영되는 강좌에는 강사의 질적 경쟁력 차원에서 뒤쳐지고(사실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역역에서 운영되는 강좌형 프로그램은 질적인 측면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수강료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여 청소년 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다. … 청소년 영역이 지역사회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고 서로 다른 영역이 협동할 수 있는 협력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즉, 우리가 노인문제나 여성문제,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다거나 연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역시 다른 영역에서도 청소년문제와의 연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에게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관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 관계있는 자원과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관계성이 부족한 자원과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높일 수 있고, 어려운 대상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로 도봉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있다. 청소년 문화존은 지자체 매칭 펀드인데, 도봉구 청소년 문화존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도봉구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푸른모임 N을 결성하고, 부족한 예산은 기업 후원을 받아 청소년 시설, 복지관, 문화정보센터, 자활센터, 도봉구 시민단체 등이 모여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지자체로부

터 공식적인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청소년 시설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청소년 이용률이다. 그런데 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만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청소년 시설은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지역의 주민은 자녀를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유치원생은 잠재적인 고객이다. ... 과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용시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오후 3시 정도부터는 모든 시설이 청소년에게만 개방된다. 이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H)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위상정립은 최우선적 정책과제이며,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지도자의 위상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M)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참으로 이상적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간의 네트워크와 다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고객 입장에서는 실비를 내야하는 부담을 지고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에서 지역 사회 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청소년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활동들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청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보다 더 좋은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N)

“현재 청소년기관은 직영기관도 있고 민간위탁기관도 있는데, 대체로 민간위탁기관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민간위탁과정이 민간위탁신청단체의 운영역량에 기초해 그 선정이 공정하게 치러지기보다는 오랜 위탁선점단체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든지 혹은 나누어서 위탁하려는 경향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기독교/천주교/원불교/불교 등으로 나누어서 위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두고 말함)이 강하다. 이런 기득권과 나눠먹기식 위탁경향을 차제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위탁선정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일부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건립되는 기관인 만큼 선정의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과 양식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적 기반의 허약이다.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무엇보다 그 원인으로 사료되지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내부 역량을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기관장 연수는 물론이고 실무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연수 등도 향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영역이 비대해지는

대신 이런 내실화 관련 연수나 컨설팅 부문은 왜소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I)

“그렇지만 체험활동(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의미있는 변화 유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가치가 낮은 것이다.” (K)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운동적 접근’ 으로 풀이하며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행했음. 특히 지역사회 현안에 청소년위치에서 그들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에서의 몇 가지 프로그램만 진행한다고 해서 그 안의 실질적인 어떠한 전문성이 청소년활동정책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이미 어려운 상태이다. 청소년시설과 평생교육기관, 대학의 비슷한 프로그램,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강사진의 차이를 찾기에는 불가능하다.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해 논하는 것도 중요하나 실제 지역사회의 관계(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 사료된다. 청소년활동에 대해 접근할 때 “시민참여적 접근”과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적 접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J)

“지역의 청소년기관은 청소년활동의 중추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교육과 청소년복지 등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요한 청소년 교육문제나 복지문제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관은 프로그램의 운영기관이 아니라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공간이어야 한다. 미국의 Pitman은 청소년은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간에서 성장한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일변도의 사업 관행을 경고한 바 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은 조작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자체 생산하여 조금의 이익이라도 남기려는 영세한 재래시장 할머니 좌판 운영 방식에서 지역사회의 수많은 자원들이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 방법은 학원과 같은 강좌방식이나 아니라 체험을 중시하는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IT 분야 전문 인력,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인력 등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을 통해 청소년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청소년기관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새로운 거듭나기는 단순한 게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한국사회 청소년정책의 거듭나기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다.” (O)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보면,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은 1992년 150여개 이던 것이 2011년에는 738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II-1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서 울	59	33	16	2	0	3	5
부 산	23	7	9	4	2	1	0
대 구	12	5	5	1	0	1	0
인 천	24	7	6	5	2	4	0
광 주	11	5	4	1	0	1	0
대 전	13	4	7	1	0	1	0
울 산	9	1	6	2	0	0	0
경 기	144	27	40	52	6	18	1
강 원	77	14	26	14	5	18	0
충 북	43	9	9	13	2	10	0
충 남	46	7	11	13	3	12	0
전 북	53	13	20	11	3	5	1
전 남	44	12	11	10	6	5	0
경 북	66	16	11	16	7	16	0
경 남	71	13	15	26	4	13	0
제 주	43	3	19	5	3	13	0
총계	738	176	215	176	43	121	7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참고자료.(2011.12.31. 현재, 단위 : 개소)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의 설치율 현황은 표 II-2와 같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시·군·구와 읍·면·동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율은 낮은 상태이다.

표 II-2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설치율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군구수	시설수	설치율 (시설수/시군구수)	읍면동수	시설수	설치율 (시설수/읍면동수)
계	228	176	77.2%	3,474	215	6.2%
서울	25	33	132.0%	424	16	3.8%
부산	16	7	43.8%	215	9	4.2%
대구	8	5	62.5%	143	5	3.5%
인천	10	7	70.0%	141	6	4.3%
광주	5	5	100.0%	92	4	4.3%
대전	5	4	80.0%	76	7	9.2%
울산	5	1	20.0%	56	6	10.7%
경기	31	27	87.1%	539	40	7.4%
강원	18	14	77.8%	193	26	13.5%
충북	12	9	75.0%	154	9	5.8%
충남	16	7	43.8%	211	11	5.2%
전북	14	13	92.9%	241	20	8.3%
전남	22	12	54.5%	295	11	3.7%
경북	23	16	69.6%	331	11	3.3%
경남	18	13	72.2%	320	15	4.7%
제주	0	3	-	43	19	44.2%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참고자료(2011.12.31. 현재, 단위 : 개소)

청소년활동시설은 현재로서는 확장만이 능사가 아니다. 법정설치율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사실 이런 목표도 뚜렷하지 않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야 할 시설의 목표치를 시설의 종류와 규모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의 설치에 그간 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양산되어 왔다. 청소년활동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정책은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의 설치 뿐 아니라 시설 개보수, 지원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장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시설의 문제는 시설의 노후화 보다는 시설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판단된다. ...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설들을 개보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적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의 다양한 유허공간들과 공공시설들의 짜투리공간,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공간 확보 등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을 찾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가 하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양적 증가를 지향함으로써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특성화하여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사, 시설 인프라 등 제반요소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시설 건립시부터 청소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C)

“시설의 유형화, 유형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지역특성과 청소년시설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우선시된다.” (L)

“청소년 시설의 확대에는 법정 권장이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설의 지역 특성 고려, 시설 내용의 적정화 및 기능의 고려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채로 설계자들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고 안정된 시설을 건립하지 못했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설 설계 당시에 청소년 전문가의 자문회의 참여와 더불어 운영기관을 빨리 선정해서 시설의 시공 및 시공에 참여하게 하고 그 감독권한을 주어야 한다.” (E)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장의 공적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청소년인구, 운영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짓고 있는 실정이며 정해진 투자비용을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 접근성이나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의 토지 즉 외진 곳에 시설을 건립하다보니 준공이후 이용률이 없고 그러다 보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부처 예산을 건립예산에 포함시키다보니 청소년시설인지 문화관광부시설인지 여성회관인지 도서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기존 문화의집의 역할 변경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 또는 기존의 하드웨어 즉 주민자치센터나 공부방을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공간(최전방-GOP)개념 형태의 청소년시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G)

“청소년시설의 수는 절대 부족함이 현실이다. 우선 청소년시설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지역에 기반한 청소년시설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사업에 역량을 소진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F)

“지역사회별 장기플랜을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 복지, 체육, 문화정책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이 절실하다. 어느 한 지역을 설정하여 청소년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회 분석과 청소년시설(이용시설 포함) 확보방안, 이용제도화 등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프로그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시설을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프로그램적인 접근’ 을 떠나서 지역사회 청소년 개발관점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B)

“2011년 현재 721개의 청소년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2011, 여성가족부),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막연하게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과 같이 대규모 수련관 중심의 시설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 시설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청소년 시설(예: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이보다 작은 청소년 공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수련관 1개 지을 예산으로 10개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가능하다. …청소년 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휴 시설의 확보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즉, 청소년 시설을 건립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청소년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에 공간들을 청소년 시설로 인정(승인)하고, 이곳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의 주민센터, 아파트 내 주민 휴게 공간, 특히 종교시설, 청소년 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남는 유휴 공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비용이 대지 제외하고 건축비만 25억이라고 하면, 연간 1억씩 5개 시설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으로 연간 1억씩 5개 시설을 4년 동안 운영 및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에 따른 부담은 민간이 감당하고, 최소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국에 약 3,5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적 특화도 중요하지만, 고유한 청소년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건립된지 10년이 지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에 편성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마려되어 있지 않음.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인건비와 노후에 따른 관리운영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지자체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H)

“현재 수련관은 수영장과 강좌실이 대부분 시설에 셋팅되어 있다보니 청소년활동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 [자치활동실, 프로그램실, 체험활동실, 북카페, 문화놀이터, 생활체육 활동실 등등]이 수련관에 일정비율 이상 설치되도록 장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M)

“자연권 일부시설과 유스호스텔을 지금처럼 그대로 청소년시설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시설의 확대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활성화가 더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설이 없는 군/읍/면 단위에 대한 고려도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 시설 배치 및 건립, 운영활성화, 시설 개보수 및 지원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를 중앙차원에서 먼저 하느냐 아니면 지역단위에서 출발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 (I)

“이에 덧붙여 시설의 거대화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나 공연장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실제 청소년시설의 “자치, 참여” 등 근본적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대관사업과 수익사업의 빌미를 주기에 지자체에서 수익 모델로 접근하여 지원체계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형태의 청소년활동 시설을 가능한 많이 구축하고 그 곳에 전문 청소년활동가의 배치를 적절히 하고 지역마다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보인다.” (J)

5.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청소년지도인력 양성과정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양성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명백하다. 대학에서는 철저한 실습과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하며, 자격검정제도는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검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보수교육과 재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 모든 연수과정은 강의중심에서 사례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관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2년 동안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커리큘럼부터 조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청소년관련 학과라고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만 배운다면 사람에 대해 이해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보수교육과 재교육의 기회가 적다기보다는 청소년현장에 일이 많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순한 스킬 중심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단순한 스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보다 사회변화와 앞으로의 전망들을 예측해 나갈 수 있는 교육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A)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 검정과목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허술한 면접제도의 개선과 보수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연수 내용도 이론교육과 함께 실기와 실습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강사의 다변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C)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체계화, 통일화하는 노력, 실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실습지도매뉴얼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수교육과 재교육, 기관장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대학과 함께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I)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계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다만 욕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은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활동 영역이 많은 부분 차지하므로 전문 연수과정을 다양하고 연속적으로 열어 주면 좋겠다. 또한 팀장, 부장, 관장 등 경력이 누적되는 지도자들을 위한 3년차, 5년차, 7년차 연수와 그 이상을 종사한 지도자를 위한 워크샵이 있으면 한다.” (E)

“지도사의 배출기준이 청소년상담사의 배출기준에 맞춘다면 질적인 수준은 올라 갈 수 있겠지만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볼 때에는 소량배출의 질적 수준강화 보다는 대량배출의 양적 수준 강화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실습을 담당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어 부가적인 업무로 일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어 실습담당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검정제도 또한 경력을 통해 승급이나 지도사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축소(단 승급에는 경력을 인정)해야한다. 경력이 아닌 청소년학을 전공했거나 과목을 이수한 자로 변경하여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되서는 안되겠다. 보수교육이나 재교육 또한 현재 한국청소년 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방향에서 양방향 또는 다방향으로 지역 특히 경남이나 전남 등 연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G)

“지금 일선에서는 청소년관련학과 출신들을 채용하기보다는 다른 학과 출신들을 채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들이 있다. … 실습위주의 교육에 찬성하며 한 가지 추가할 것은 행정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기관장의 채용기준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은 필수로 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대우의 향상도 함께 추진해야 질이 높아진다.” (F)

“사회복지, 교육학, 상담심리 등 분야별 교과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청소년학’ 의 설계가 먼저라고 생각된다. … 청소년 지도인력 양성과정이 ‘국가자격증’ 으로 초점을 맞추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 기관장뿐만 아니라 연차에 따른 전문화과정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바라보는 청소년학적 시각’ 이 먼저 통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B)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1급, 청소년학과를 졸업하면 2급, 그런데 현장에서는 1급을 선호

/ 우리의 현실이다. ... 현행 제도에서 청소년학과를 졸업하면 정해진 시험을 통해 1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1급에 시험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정도의 시험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이버 과정을 통해 주어진 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엄격한 과정이 필요하다. 적용할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가 실습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실습비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제대로 실습을 받아, 전문적인 지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격증을 받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 자격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이 기간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면, 청소년지도사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규직원과 경력직원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관장 교육 역시, 신규 기관장과 몇 년동안 기관장을 수행한 교육은 달라야 한다. ... 대상자에게 맞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H)

“유시험자격제도로 복귀해야 한다. 유시험제도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그만큼 들어가는 일련의 경비와 노력도 다소 소모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청소년지도인력이 갖는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준받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시험자격제도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실습은 지금보다 엄밀하고 철저히 이루어지되 교생실습과 같이 친밀 멘토 1인에 두세명 정도의 소규모 멘토링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습은 현재 시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시수중심제 실습)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장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달 등의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실습(기간중심제 실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

“보수교육, 재교육이 기회, 교육과정의 철저. 연수과정에서의 특색 등 중요한 부분이 많다. 특히 기관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자격과정의 시험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최소한의 시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특히 현재 시행되는 면접제도의 한계도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관장의 자격 요건은 매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단지 자격증이나 전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 정치적 관계와 이해를 통해 청소년시설의 기관장이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종합적 단체들(YMCA, YWCA, 흥사단 등) 여러 활동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면서 청소년시설을 이탁받는 단체들의 기관장들의 겸직은 철저히 금해야 하며, 기관장에 대한 자격 또한 단지 단체에서 일했던 경력이 아닌 정확히 청소년활동 경력을 확인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이나 재단법인 등에서 지자체에서 기관장을 배치할 때 정치적 색깔과 퇴직공무원의 임용을 막을 수 있는 체계 또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J)

“현재와 같이 청소년기관 등 사업현장의 여러 기구들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청소년수련 활동이나 청소년상담복지 중심의 폐쇄적 청소년현장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습과정을 강화하거나 무작정 재교육기회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청소년(활동)정책과 사업의 정체성 재검토와 함께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정립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 우리 나름의 ‘청소년지도자의 핵심역량 프레임워크(core competency frameworks)’ 를 만들어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련의 과목(subjects)들의 특성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

청소년지도자의 핵심 역량은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과 효과적으로 사업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인간적 태도로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은 물론 조직과 지역사회에 자원이 되도록 하는 ‘인증된 능력’ 이다. 청소년사업은 다양한 장소, 공간 및 시간에서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개입하기 때문에 정치적 운동에서부터 거리사업, 스포츠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값싼 카페 운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을 담당할 수 있다.” (O)

“청소년정책이 지역에서 실행되려면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가 중요한데 농어촌지역의 군단위에 가면 실제 제대로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 지금처럼 느슨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시스템에서는 역량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길러낼 수 없다. … 일련의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가 적어도 ‘교사’ 수준은 되어야 한다. 향후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준을 ‘교사수준’ 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K)

6.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 중의 하나는 사회변화, 지역사회 변화에 청소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참여제도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 소수 아이들의 참여가 아닌, 특정한 장에서만 참여가 아닌 보통의 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정책에서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화는 사업의 체계적인 재배치하거나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활동정책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Pittman, 2000, p.23). 이것이 청소년활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활동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 청소년 개개인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도 지역사회 참여활동 못지않게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은 유아기나 초등학교 등 저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교육 및 훈련을 통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참여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후에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도자가 아닌 청소년들의 손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일상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나 일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L)

“이 참여의 핵심은 청소년의 인권, 인격권, 성인과의 대등한 권한과 의무의 한계에 대한 논의 등 많은 선행 논제가 다루어지거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할 때 교권과의 갈등 문제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입시위주의 현 교육방식에서는 기성세대가 수용하기에 너무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한다.” (E)

“지역사회의 변화의 중심에 청소년이 중심이 서게 한다면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며 객체에서 주체로 문제의 대상에서 문제의 해결자로 사회흐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지역바로알기 사업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참여를 통해 변화운동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법에서 19세 성년으로 법령이 시행되는 해가 13년도로 성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이것은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시민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의 정책참여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G)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활동정책의 주가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기를 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의식변화와 맞춰져 진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카페도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 주류의 청소년계와는 조금 다른 해석과 시각을 가진 지역풀뿌리 단체들이 청소년문화를 지역사회화 한다며 개별적으로 17곳이 선정되어 추진된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지역의 대중적 참여도를 끌어내기보다는 그 단체 색깔에 맞는 청소년의 참여와 그런 청소년의 육성이 예측되며, 그것이 미리 합의되고 성숙되어 진행되는 청소년문화 조성이 아니라 일종의 또다른 공모사업화로 전락될 요소가 높기 때문이다.” (F)

“현 교사, 강사, 전문역량을 갖춘 주부 등 지역사회 안에서 현실적인 지도자 확보방안이 가능해야만 청소년 참여활동이 모든 청소년활동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으나, 이 참여제도는 정책 참여 또는 시설 운영에 한정된 참여제도로써, 그 성과나 실효성을 지역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일상적 참여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모임을 지원하고 쉽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사업 중 청소년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직접 사업비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핵심이 아니라 이 사업을 주도 할 주민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자발적 주민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예산이 중단되어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유지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의 발전적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이러한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활동에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센터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조언과, 기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들이 참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온라인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 자신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변화 사례가 지역사회 주민에게 노출되고, 더 나아가 이들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변화 활동과 활동 과정을 총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활동 진행과 성과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H)

“청소년은 자신들의 건전한 성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그 중심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동아리 활동 또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M)

“청소년에 의한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청소년활동의 의미가 된다고 생각한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청소년이 서있고 이것이 곧 청소년의 역량계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N)

“청소년자치활동이 핵심이다. ‘자치(自治)’ 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을 뜻한다.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며, 학교내외의 다양한 환경에서 행하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조직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그래도 청소년활동이 학원과 평생교육원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나 청소년시설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청소년 참여적 기반에서의 활동이라 여기지 않는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을 것이다. 부족하나마 지역사회 활동 경험에 따라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에 따라 몇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혹, 제안하는 의견에 문제가 있으면 서슴없이 비판해 주기 바란다. 청소년활동에 따라 또 다른 제안과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행하는데 '청소년참여'는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모든 활동은 가능하면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최상위 이념에 부합하는지 해석이 있어야 한다. '참여'는 핵심이다.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에서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시민, 특히 '민주시민'을 선택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추진방향)까지도 정책 하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첫 호가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며,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능동적 삶, 그들 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 조국을 위한 자질향상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이다.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이며 관리의 대상으로 지시받는 대상화 된 경우 이러한 기본 가치와 방향은 맞지 않는다. 가능한 청소년참여의 기본 개념과 같이 모든 활동 가운데에는 '청소년들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에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라 하면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자치적이며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언할 수 없지만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형식적으로 선출은 하나 지속적인 관계에서 국가, 지역 정책을 제안하거나 운영위원회가 기관시설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의 청소년관련 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역과 전국적인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담보하여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정책 제안 기구로서 교육적 차원에서 마칠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제안하여 정책의 실질적 변화까지도 추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운영위원회 활동 또한 명목상 운영위라는 타이틀만을 알릴게 아니다. 실제적인 참여를 통해 기관운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이 기관시설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실질적인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는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진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다. 참여, 인권, 시민성 등 관련 척도도 다양하다. 사업 진행하기에도 버거운데 청소년참여 운운하는 것에 대해 힘겨워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연수는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의

모든 일들은 청소년참여와 자치의 기본 가치가 포함되어야 옳다. 캠프나 정책개발 등 청소년활동 영역이 다들지라도 그 안에서 실질적 참여 과정에 대한 면밀한 실무적인 역할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실질적 전문 연수가 현장 활동가들에게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모델링된 활동을 알리고, 지속적인 청소년지도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특히 소셜네트워크(SNS)의 활용을 하고 있다. 수년간 청소년과 관계된 온라인에 참여해 왔고, 실질적 사회참여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SNS 만큼 막강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수단은 처음 경험하게 된다. 특히 현재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그룹 등을 통해 연대되어진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SNS를 활용해 전국 각지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가치'에 따른 활동 사례와 지원, 지지, 격려, 평가 등 다양한 지도자들만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생활권시설에서는 반드시 청소년자치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참여와 자치를 주장 하면서 기관시설의 내적 청소년조직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능 할까? 기관 밖의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한 시설 내 청소년동아리,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자치조직이 실제 참여하며 활동해야 한다. 사업을 만들어 갈 때에도 이들이 기본적인 중심으로 잡고 진행할 때 자연스러운 참여활동이 이루어진다. 지역 청소년축제나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고 이들이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다만 최소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센터 등의 시설에서는 가능하면 자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이들이 시설 운영부터 프로그램의 진행까지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J)

“이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울 청소년지도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란 바로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본다.” (K)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사회에 인지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적어도 인증제가 너무 절차 복잡하고 무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상별로 시대별로 시시각각으로 변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보다 신속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사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은 전국적으로 봐서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역할로서는 영향력이 약하다. 오히려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바꾸거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기관들이 콘소시엄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모사업 뿐 아니라 청소년문화존 사업 기타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들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으로 연계하여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등의 방법도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II-3 청소년활동 지원(청소년활동) <청소년 문화존>

구 분	시·도 대표 문화존	시·군·구 문화존
지원규모	개소당 100백만원(지방비 포함)	개소당 40백만원(지방비 포함)
운영횟수	연 15회 이상	연 8회 이상
운영장소	기선정 장소	기선정 장소
운영기간	3~12월	3~12월
운영기관	지자체별로 자체 선정	지자체별로 자체 선정
운영개소	16개소	110개소

※ '04년 37개 16억원(시·도 8개, 시·군·구 29개) → '11년~126개 24억원(시·도 16개, 시·군·구 110개)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표 II-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청소년활동)

국내청소년활동 인증기준 (학교단체 수련활동)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구 분	영역 / 유형	기준	확인 요소		구 분	영역 / 유형	기준 (국내/해외)	확인요소 (국내/해외)
인증 기준	공통 기준	소 계	14	23 (24)	인증 기준	소 계	14/14	31/35
		1.활동프로그램	5	9 (10)		1.활동프로그램	5/5	13/14
		2.지도력	2	3		2.지도력	2/2	6/6
		3.활동환경	6	10		3.활동환경	6/6	11/14
		4.활동기록관리	1	1		4.활동기록관리	1/1	1/1
	개별 기준	숙박형	3	3	개별 기준	숙박형	2/1	2/1
		이동형	5	5		이동형	4/3	4/3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표 II-5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연도별 운영지원 개소수

(단위: 개)

설치대상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개소수	162	174	174	174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0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표 II-6 청소년운영위원회 연도별 운영지원 개소수

(단위: 개)

설치대상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개소수	258	273	286	286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0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로 청소년활동은 하루 2시간~3시간 3회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사를 활용한 강좌형식에 약간의 체험활동을 덧붙인 형태로 표준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평가기준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포괄할 수 없게 구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한 다는 것은 일정정도 포기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공모사업을 컨소시엄 형태로 전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화되어야 실질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존 행사들을 이벤트형사로 전략해있다. 대부분의 문화존 예산들은 앰프대여, 천막대여 등의 대여료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공연 또는 체험부스 운영이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 문화존 자체가 토요일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한 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의 공신력과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복잡성으로 다소의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국한된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청소년활동인증제로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성, 다양성, 전문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 ... 대규모 청소년단체 보다는 중소규모의

청소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하며, 단체의 유형에 따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C)

“인증프로그램 개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개발된 이후에 현장에서 인증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L)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정부나 자치 단체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나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한다면 될 것이며 이는 국가나 청소년진흥원 등이 개입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 현재의 인증제도를 포함한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점은 국가나 인증위원회 등이 개입해야 하는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보조금부분과 공모사업,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서 영역 구분이 필요하다.” (E)

“우선 인증제는 프로그램의 공공성 보다는 시설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당초에 만들어졌던 인증프로그램이 1일 단순체험형이라 인증요건에서 배제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어 인증포기를 하게 된다면 향후 인증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포기나 보완이 요구되고 이는 참여자나 개발자나 운영자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증을 통해 공공시설로서의 대국민 인증제가 필요하지 개별적인 프로그램인증은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공모사업은 기존의 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새로운 청소년활동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맞게 동아리활동을 통해 얻게된 기능, 공연, 기술등을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하게 지원해야 한다.” (G)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개인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고 안하고를 따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인증된 프로그램의 내용도 질이 낮고 시행단계의 비정형성이나 인풋 아웃풋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F)

“운영, 평가 등 모든 것이 시설별로 분절되어 있는 실정에서 콘소시엄은 형식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무늬만’ 네트워크에 머무는 것은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000협의체, 000네트워크는 범람하지만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모색과 agenda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지역사업을 구상하게 해보는 시도는 다른 실천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B)

“인증제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본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현장에 프로그램 운영 능력(특히 계획 및 평가)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년 간 인증 제도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 되지 않고, 여전히 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 인증을 받고, 4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대한 검토도 요청된다. … 도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영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대표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선정하거나, 브랜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기간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당 사업은 자체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근에는 3년 정도 운영하면, 동일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정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 도봉구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최초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업비를 공모 받아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기업에서 기부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복지관으로 지원되었다. 이처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복지기관이나 기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 못해 기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H)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 공모사업은 창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의 전개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M)

“인증 받은 활동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활동들이 역량 지표별로 모아지고 정돈되는 작업을 거쳐 공통된 활동으로 재탄생시킨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N)

“프로그램 공모제는 중앙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공모제를 재원의 배분 기회로 삼음으로써 애초의 공모제가 갖는 목적을 희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말 그대로 공모제의 경우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전파사례로 삼아 해당관련 기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공모절차 및 선정 후 결과발표란 단선적 절차만 갖고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배분으로 인원의 확충(계약직), 기관재정 보완 및 홍보 등의 기회로 삼기 일쑤이다. … 청소년문화존의 경우 지역 내 기관 간 협업(co-work)의 기회로 삼아 프로그램 및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두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역시 문화존 주관기관의 운영 역량 및 네트워크 역량 부족, 지자체 및 협력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I)

“인증제의 핵심은 내용적 체계화와 안정이라고 이해했다. 문제는 프로그램을 인증받아도 담당 실무자가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할 때 본래의 목적과 내용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그 노하우가 쌓인다는 것은 그 조직의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이 성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하고 진행한 담당자가 떠나거나 문제가 될 때 과연 기관에 노하우가 쌓인다고 해서 인증제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J)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과 인증사업을 적절히 연계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인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K)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 청소년과 부모들은 안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정해 줄 때 그 제도적 존재감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운영의 허가 등록을 받고 있는 청소년시설, 기관, 단체들이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사회 기관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 프로그램, 프로젝트들에 대한 인증 시스템이 필요로 한 것이다. ... 숙박을 주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다.” (O)

7. 지역격차해소

청소년계가 전반적으로 열악하지만, 그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 역할을 해야 공모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사업도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내 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어, 콘소시엄 방식 등으로 운영을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결국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내 기관의 연계를 통한 운영을 기본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만으로 지역격차가 해소되기는 힘들며, 지역사회에서 콘소시엄을 구성할 만큼의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콘소시엄이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소년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공모사업비를 지역별 청소년예산 대비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지원비 형태로 분산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모사업의 방식을 연단위 사업이 아닌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컨소시엄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현재 청소년기관들이 이러한 컨소시엄 사업들에 대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부족하다면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을 수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청소년현장은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들이 적고, 콘소시엄 방식의 사업들 풀어내는 역량들이 크지 않아 대부분 돈을 나누어 서로 집행해 한 활동을 묶어내는 형식이지 모아내는 방식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는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단체 및 시설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발전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C)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 청소년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분명해짐과 동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통해 이를 수 있다.” (L)

“지역 격차를 위해서 콘소시엄 사업을 권장한다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어떻든 간에 주기관과 부기관의 역할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주 기관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사업비가 이를 보상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 주 기관의 역할을 하는 곳에 활동 진행비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

“그럴 기술적 능력과 WELFARE적 마인드가 청소년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F)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사회 기관연계나 지역적 차이를 그대로 나타내는 데는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본다. ... 기관운영체계는 그대로 둔 채 공모사업형태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목마름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수익사업/목적사업(공모사업)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 청소년기관들의 사업형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현실은 그나마 공모사업이 기관의 공공성의 명줄을 유지하는 무료참가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없애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기관 전반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까?” (B)

“콘소시엄 형태로의 제한적 참여로의 공모사업은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형태로의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형사업은 콘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M)

“청소년관련 공모사업이 여성가족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타 부처에도 있고, 지자체에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도 있다. 이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콘소시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에 기준 없이 콘소시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다.” (D)

“공모사업이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사업의 실시로 모니터링 되어지고, 변화 개발되어져서 보다 질 높은 활동이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 (N)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환경은 모든 지역이 다르다. 운영체계(위탁, 직영, 공간체제, 법인체제, 개인 등)부터 국가/지자체 지원예산, 시설규모까지 모두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지역의 청소년기관시설을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결국은 현재의 지원체계를 일원화(등급별)해야 한다. 최소한 생활권 시설에서의 평가체계에 맞추어 사업과 운영 및 지원체계의 어느 정도의 구체적 틀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가 자각하고 내적 프로그램에 집착하지 않고 ‘운동성’ 강화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 강화하며 지역의 청소년일이 자신의 기관의 일로서 받아들이며 지속적 활동 가운데 재정적 마련도 함께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실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며 지원하고 만들어 가는 지역 조직들이

존재한다.” (J)

“공모사업이 지향해야 할 점은 분명히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러나 지역내 청소년기관이나 시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고 실속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지역단위에서 청소년정책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 정책과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K)

8. 예산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지만, 청소년활동정책 예산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사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수정하지 않는 한 큰 진전은 없을 것이다. 일단 청소년활동정책이 목표에서부터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더 큰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지도인력, 청소년단체 및 기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일이 예산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임금의 향상 및 복지향상 등 일련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 이상의 수단은 없다. 따라서 청소년기관들이 사업수행에 발목 잡히지 않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 키우기에 역주할 수 있도록 청소년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표 II-7 청소년활동 지원(청소년활동)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계	7,055	5,965	5,965	5,275	5,031	5,687
프로그램공모	2,650	2,035	2,035	1,960	1,831	1,771
문화존	2,992	2,930	2,930	2,465	2,400	2,400
동아리	1,413	1,000	1,000	850	800	800
나라사랑체험	-	-	-	-	-	716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20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예산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처럼 교과부에서 더 잘 할 수 있거나 중복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문화존 사업 등도 제대로 된 평가들을 통해서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

“청소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만 전체 진행하는 방안은 청소년 계에서도 숙고해 봐야 한다. 사회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면서 보조금이 한계에 도달하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병행해 후원금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일맥이라 생각한다. 청소년계도 경쟁력 있는 우수프로그램을 통한 자율적인 이용 요금의 책정(이용요금의 유연화), 후원금의 개발과 같은 민간 자원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후원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

“예산의 분배정책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행정체계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진흥원이나 상담복지원등에서 예산의 분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예산분배에서 일부기관만 혜택이 집중되는 보편적이지 못한 분배정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프로그램이나 교과관련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는다. 공공시설이 아니기에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혹자의 의견에서도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공공시설과 동등한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청소년시설이 민간에서 투자하여 설립된 시설이라면 사립학교처럼 볼 수 있지만 국도비가 지원되어져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면 예산에 대한 분배정책을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G)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재정 확충을 정부나 지자체에만 맡기고 기다릴 순 없다. 기업이던 지역사회권 청소년시설의 역할이 사회변화와 청소년변화를 통한 구체적인 가치화로 드러날 때 청소년시설의 예산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종사자에 대한 역할과 대우의 기준이 형성될 것이다. 즉, 청소년시설의 예산 확충은 그동안 앞서서 정부탓만 하며 예산이 부족해 일하기가 어렵고 대우가 열악하다고 해온 1세대 청소년시설장들의 나약함과 책임 전가, 복지부동함에 원인이

있다. 이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종합적인 청소년 다각화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F)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비지원’ 에는 몇 백원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청소년육성사업예산’ 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들에게나, 중앙정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에 대한 투자가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청소년상담원으로 진로사업(두드림존) 등 청소년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원인분석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중앙공무원 중심의 인사,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일 것이다.” (B)

“극단적으로 지금의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지금의 강좌 운영을 통해 운영비를 벌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 아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진 가치에 대한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정책부서나 연구원에서는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 지역사회 존재감을 키우기에 역주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에 대 찬성하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사회와 이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지도자에게 가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H)

“청소년활동시설의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욕구, 정책, 정치적 특성을 재수정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여가부와 교과부와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아닌 여가부의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선점이 요구되며, 청소년활동시설을 연 몇 회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활동확인서 제도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M)

“기금의 정책적 사용항목에 대한 전면적 손질(시설확충 위주의 기금예산항목)이 필요하고 이를 지도인력 및 프로그램 등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청소년활동현장의 질적 측면에 대한 지원과 강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고 전체 차원에서 청소년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부처가 오히려 내부예산 중 청소년부문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I)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존재감 키우기에 전념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예산 타령하지 않는다는 공동 합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O)

“지역에서의 예산 확보는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 확립을 통해 가능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유도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 시군의 예산정책은 철저히 ‘표’ 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에서는 청소년정책이 ‘표’ 와 크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K)

제 III 장



결 론

제 III 장 결 론

전문가들이 제기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활동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수련활동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만, 청소년활동개념을 재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논의이다. 최소한 수련활동의 외연을 너무 넓게 생각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이미 일부 시설이나 협회의 명칭에서 수련개념이 삭제되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정책의 범위 내에서만 청소년활동정책을 정의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활동개념이야말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계와 현장의 치열한 논쟁이 없이는 성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또한 활동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목표설정 및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개발의 개념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차별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마디로 센터는 네트워크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도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았다. 센터와 각 시설의 기능분화와 전문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제고도 고려되어야 하며, 각 시설협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만일 여기서 어떤 해답도 못 얻는다면, 앞으로 전달체계는 더 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시설 및 기관들이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자로서는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사업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향후 가장 중요한 주목해야 할 방향이다.

넷째, 청소년지도인력양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양산방식으로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인력양성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서라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정책의 주변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크게 두 가지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역량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지만,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 소홀해 왔다.

다섯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의 원리를 철저하게 반영하여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전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격차의 해소의 문제는 청소년활동정책에서는 거의 고려되어 오지 않았다. 시설의 확충, 정책사업의 운영 등 지역격차는 고려는 거의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청소년기관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0).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서울: 여성가족부.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영호. (2012). 청소년 활동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육성, 수련, 활동, 역량 :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0.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 주요업무 참고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유성렬. (2012). 청소년 역량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육성, 수련, 활동, 역량 :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21-46.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호.(2011).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사업의 진화필요성과 청소년활동 사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1-19.
- Pittman, K. (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1), p.19-24.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홍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와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규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심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더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건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보고 12-R21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인 쇄 2012년 12월 일

발 행 2012년 12월 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